

제 12 호

2013년 하반기
(7. 3 ~ 12. 31)

의정 소식

ULSANBUK-GUCOUNCILNEWSLETER

구민 복리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Ulsan Buk-gu Council Newslettr

2013. NO 12. CONTENTS

- 04 인사말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의정활동
 - 제141회 임시회
 - 제142회 임시회
 - 제143회 임시회
 - 제144회 제2차 정례회
- 10 2013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 16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 1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24 북구의 법을 만드는 북구의회
- 36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 54 사진으로 보는 의정



표지설명 : 무룡산 정상 석새

발행일 2013년 하반기 제12호
발행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회의장
편집인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전화 052-241-8975
홈페이지 <http://council.bukgu.ulsan.kr>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득 품은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10년 7월 구민들의 염원 속에 힘차게 출발한 제5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게 엊그제 같은데 6개월도 안되는 임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다가오는 6월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5대 북구의회가 전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역대 어느 의회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조례의 미비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입법연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7명의 의원 모두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울산북구 전통시장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책임지도록 하는 “울산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 무상급식 방사능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공직자 신분인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울산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들이 울산 또는

전국 최초로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5대 북구의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실시한 “2013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및 우수의회” 시상식에서 2명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북구의회가 장애인정책 우수의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 또한 2012년 의정봉사대상에 이어, 2013년에는 메니페스토 지방의원 약속대상 부문에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것을 알아주신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합니다.

그동안 북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 한해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참된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14년 올 한해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윤 치 용
연락처 010-5231-7321
선거구 농소 2·3동

“북구의 행복한 변화 좋은 일꾼으로 기억 되도록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부시장

성 명 이 수 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 2·3동

“살기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강 진 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주민과 소통하는 따뜻한 생활정치 펼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안 승 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늘 주민과 함께하는 변함없는 봉사대장이 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흥 겔
연락처 010-2950-3763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의 삶이 행복하도록 복지북구의 새로운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정 윤 석
연락처 010-3835-603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살기 좋고 행복한 북구를 위해 부지런하게 뛰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혜 경
연락처 010-9448-1364
선거구 비례대표

“북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의원정수	7	2	2	2	1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ULSAN Buk-gu Council History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의회조직





의정활동:

제141회 임시회 개회

주민주치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조례안 심의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7월 26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1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42회 임시회 개회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심의



제142회 북구의회 개회식이 9월 3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윤종 오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제142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43회 임시회 개최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관내사업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의



제143회 북구의회 개최식이 10월 22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관내사업 현장방문 및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8건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임시회중 10월 23일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3개소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 관내 주요 사업장의 사업진행사항 등을 직접 현장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대상사업이 제대로 추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상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점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매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송정호수공원 조성사업 등은 사업 완공 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정활동:

제14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과 결산 추경 등을 심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44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윤치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부탁하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이해경의원으로부터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규탄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과 결산 추경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정운석 의원은 12월 16일 제1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1건과 건의사항 85건 총 116건에 대해 감사 지적하였다.

2014년도 북구청 당초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046억원, 특별회계 16억원 등 전년대비 9.3% 증액된 2,062억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요구액 대비 0.02%인 5,302만원을 삭감하였다. 강진희 의원은 2014년도 당초예산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통해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12차 본회의 개의 후 강진희 의원의 성인지예산의 관심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 소회의실 조례안 심의장면 |

회기운영 현황 (2013. 7. 3 ~ 12. 31)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령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13년	4	52	3	18	1	34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 수	계	예산안	결 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건의안	결의안	보 고	질 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41회 2013. 7. 26	1	5			2							3
제142회 2013. 9. 3. ~ 9. 16	14	13	1		5	2				2		3
제143회 2013. 10. 22. ~ 10. 24	3	16			8	1		1			2	4
제144회 2013. 11. 20. ~ 12. 23	34	25	2		11	3			1		4	4
합 계	52	59	3	0	26	6	0	1	1	2	6	14

제141회 임시회주요안건처리 ⇨ 2013. 7. 26. (1일간)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농소3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 「산림보호법제」 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에 대해 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제142회 임시회주요안건처리 ⇨ 2013. 9. 3. ~ 9. 16.(14일간)

●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 관련 구정질문 (이홍걸의원)

- * 화봉2지구 내 저류지의 고유의 기능은 살리면서, 기 조성된 저류지 시설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의 조성 요청

● 농소2·3동 주민센터의 주차난 해소 관련 구정질문 (이수선의의원)

- * 농소2·3동 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크니 조속한 주차장 조성을 요구

●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 원안가결

- * 이즈미트시는 터키 산업의 중심지로서 현대자동차 터키공장이 진출해 있고, 항만공업도시로서 지역 특성이 우리구와 비슷하며 터키는 우리나라와 전통 우방국으로서 양도시의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09.30.시행)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최적의 인터넷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013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Ulsan Buk-gu Council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국가정보화 기본법」(2013.03.23시행) 개정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승찬·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제143회 임시회주요안건처리 ⇨ 2013. 10. 22.~ 10. 24.(3일간)

- 5분 자유발언 – 역사의 진실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조국의 미래가 있다 (**안승찬의원**)
 - * 왜곡된 역사책의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아 올바른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5분 자유발언 –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협하는 원전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혜경의원**)
 - * 명분 없는 밀양 철탑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강진희의원**) ▶ **원안가결**
 - * 현 정부는 대선공약인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과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 지침에 따른 2014년도 계획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의의원**) ▶ **원안가결**
 -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청소대행계약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2013.6.17.)에 따른 법령상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 명예감시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10일로 조정하고자 함

제144회 임시회주요안건처리 ⇨ 2013. 11. 20. ~ 12. 23.(34일간)

○ 5분 자유발언 – 민주주의 파괴, 진보정당 해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강진희의원)

- * 정부와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규탄

○ 5분 자유발언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진보당 14년 (이혜경의원)

- *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서민과 함께 해온 정당

2013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Ulsan Buk-gu Council

- 5분 자유발언 –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중단

- 5분 자유발언 –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원년입니다 (강진희의원)

* 성평등을 위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촉구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농소2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 매곡도서관 건립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2013.07.29)이 개정되어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을 규정에 맞게 설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 10. 31.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사항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식함양 기회를 위한 학습휴가를 신설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염포동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 **심의보류**

-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 **원안가결**

- *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공중화장실 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또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공영주차장 관련 적용 법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의보류**

- *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 살포되어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and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수정가결**

- *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01. 북구의회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 실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회체험 프로젝트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북구지회(회장 류영호) 주관으로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가 8월 27일 15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회원 10명 및 호계고등학교 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수준별 이동수업 폐지의 건'을 의제로 정하고 회의를 열고 모의의회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솔직히 잘몰랐으나, 직접 체험해보니 의회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풀뿌리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02. 친환경 농산물 수확 자원봉사 실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북구의회는 9월 3일 오전 11시부터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자재로 납품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수확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단배추와 상추를 직접 수확하면서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걸 느꼈다."며, "이처럼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직접 소비하는 로컬푸드체계가 북구에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03. 북구의회 의정비 6년 연속 동결결정

어려운 경제상황을 서민과 함께



울산 북구의회(의장 윤치용)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의원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의 의정비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동결함으로써 의원별로 연 3,887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비 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울산 북구 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됐다. 특히, 2014도 의정비는 지난 2년간의 공무원 보수 인상율 6.3%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였다.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은 의정비 동결에 만장일치의 뜻을 모아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의원이 뜻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04.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전달

민족 최대의 명절에 주변 이웃들을 돌아봐



북구의회는 9월 16일 오후 1시 관내 복지시설인 굿실버 전문요양원, 천곡 지역아동센터, 하늘아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학습교구를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하며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위문품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05. 북구의회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자원봉사 실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의회는 10월 24일 오전 11시 20분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했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어르신들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북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06. 북구의회 2013 울산광역시 장애인정책 우수의회 수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여러분들의 마음은 편해지도록 더욱더 노력



북구의회가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주관하여 11월 14일 오후3시 울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울산광역시 의정모니터링 백서발간 및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회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평소에도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발벗고 나섰던 북구의회 강진희의원원과 이혜경의원원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한해동안 5개 시·구·군 의회의원들의 장애인정책 조례 발의 건수 및 장애인정책 제언 및 장애인인권 개선활동 등의 실적을 평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우수의회로 선정하였다. 이날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북구의회 강진희의원원과 이혜경의원원은 “상받을 만한 일을 한게 없어 부끄럽다.”며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더욱더 노력하라는 당부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① 목 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②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③ 감사기간 | 2013. 11. 21. ~ 2013. 11. 29.(9일간) |

④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6	31	85
공 통 사 항	(7)	(2)	(5)
기 획 홍 보 실	8	3	5
총 무 국	34	11	23
복 지 경 제 국	40	9	31
건 설 도 시 국	29	6	23
보 건 소	3	1	2
의 회 사 무 과	2	1	1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



의장 | 윤 치 용

- 폭우 시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이 배수장 설치를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해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 차원에서라도 관계부서와 협력하는 등 배수장 설치를 재검토 바람. 원동아파트 뒤편 천곡들 침수와 관련하여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 천곡천 지류 변경을 요청하였으니 검토바람.
- 농민들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수요자는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 받음은 물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사업, 꾸러미 밥상 등은 중요한 부분임.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토대로 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정임석 열사 추모회가 결성되어 4. 19. 추모제 행사를 하고, 구에서도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는 선양사업 및 묘지 관리 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음. 유족회와의 협의를 통한 사단법인 결성 지원 등 열사 선양 정책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부의장 | 이 수 선

- 어린이집 점검과 관련하여 미점검 어린이집이 타 구에 비해 많음. 어린이집 미점검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제대로 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관리 감독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아동이나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길 조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 지형지물에 밝은 지역 인원으로 구성된 유해조수피해방제단이 지역 곳곳에서 신속한 방제활동을 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방제단과 협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



운영위원장 | **강 진 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관내 기업이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수요층을 조사하는 등 남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 바람.

문화회관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이 학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 해부터는 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 바람.
- 공원 관리에 있어 여성·시민 사회단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설계 (CPTED) 관점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미흡한 점이 많았음. 특히, 공원 화장실에 여성 이용을 고려한 비상벨 설치, 공원 안내판 위치와 내용에 대한 정비, 가로등을 가리는 부분에 대한 나무 전지작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1공원 1단체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현대자동차 직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문화회관 일원에 주차장을 확보 하기로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주간 연속 2교대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의원 | **안 승 찬**

-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시설과 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 왔지만, 소비자 들의 구매 충동을 일으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골목 상권 살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더불어 기대 욕구 또한 많은 상태이므로,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하여 원활 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도서관 사업에 열정이 높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 차원에서도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와 주민 설득 노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을 북구 전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



의원 | 이 홍 결

- 마을장학금과 외부 기업의 학자금 관계에 있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구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양양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각종 행사 시 내빈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내빈 위주의 행사는 행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내빈소개 등 행사 의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수의계약은 해당 사업의 계약 목적과 법적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의원 | 정 윤 석

- 명촌지역 주민들의 테니스장 수요가 많으므로 명촌주공아파트와 동천강 제방 사이 일원이나 또는 적절한 장소를 조사하는 등 명촌 일원에 테니스장 조성을 검토 바람.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었음. 유사석유 판매 행위는 그 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단속 바람.
- 명촌 진장지역 내 어린이공원 부지는 있으나 창고, 주차장, 건축 자재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없는 상태임. 어린이공원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



의원 | 이혜경

-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의무대상시설에서도 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이 많이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공사 중인 구청사 일원에서도 장애인 점자블록 일원의 환경 개선과 보도 일원의 높낮이 조정, 경사로 설치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조치 바람.
- 자활기업이 임금 지급 문제로 적자를 유지하는 등 제대로 된 자활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자활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자활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기업 진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재활용선별장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여성분이 많으며, 임금 수준 또한 낮은 편임.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있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개선과 복리후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북구의 법을 만드는 북구의회

○ 윤치용 의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② 주요내용

➔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제안이유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함

② 주요내용

➔ 제2조(적용범위)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 제4조(지원기준 등) ② 보조금의 지원기준

세 대 수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원)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000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000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000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000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000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80% 이하	5,000,000

※ 총 사업비 300만원 이하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가능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간 재지원 제한

➔ 제4조의2(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주차장 확충사업
2. 단지 내 도로(인도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5. 수목의 전지 및 방제
6.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8.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10.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3.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14.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16.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북구의 법을 만드는 북구의회

○ 이수선 부의장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①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한국문화, 사회 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생활 교육에 관한 사업
4. 아동 보육과 교육 사업
5.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6.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계전문가
 4. 다문화가족 대표
 5.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관련 전문가
-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제5조(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보호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2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제1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북구의 법을 만드는 북구의회

○ 강진희 운영위원장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① 제안이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② 주요내용

- ➔ **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국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국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제7조(인권교육 실시)**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2명
 -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 5. 북구 구민으로서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심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
- ➔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6조제2항의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강진희 운영위원장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① 제안이유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 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
 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8.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 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 구청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모든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③ 전수검사는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한다.
- ④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학교 공급 정책에 반영한다.
- ⑤ 센터는 제2항의 전수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추 수 있다.

북구의 법을 만드는 북구의회

○ 안승찬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①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② 주요내용

➔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생활체육단체·생활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 체육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8.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
10.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보호와 육성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생활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10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각종 대회 및 생활체육단체 등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

① 제안이유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② 주요내용

- ➔ **제9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 및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1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야 한다.
- ➔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③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 **제13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저학년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를 함께하는 등·하교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북구의 법을 만드는 북구의회

○ 정윤석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① 제안이유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 **제4조(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제6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 3.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제8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① 제안이유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빈번한 소음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을 실천하고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② 주요내용

-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
- ➔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인근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제8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저진동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공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북구의 법을 만드는 북구의회

○ 이혜경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② 주요내용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2. 업무담당국장
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과 연계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6.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대안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①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② 주요내용

- ➔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보조서비스
 2.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3. 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6.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8. 주거지원
 9. 중증장애가정의 출산, 양육지원서비스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 **제8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2.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3.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4.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센터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과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전공 교수, 시민사회단체, 재활전문가 등)·장애인당사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등민생복지공약이행촉구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42회 임시회 (2013. 10. 24.)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 의원(효문,양정,염포동)

“대선 공약”은 국민에 대한 가장 엄숙한 약속이자, 한 사회의 비전을 압축한 미래입니다. 그 어떤 약속과 무게를 비교할 수 없으며, “공약 파기”는 곧 정치적 신뢰의 파산임을 박근혜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대선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찌 “원칙과 신뢰”가 국정철학이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근혜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대선 공약과 공약가계부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소득 70%이하 차등(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3대 비급여 항목 제외로 뒤집혔으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비예산사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공약 국고보조율 20% 인상은 10% 인상에 그쳐 후퇴하였으며, 이 자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교 의무교육 예산을 지방에 100% 떠넘기는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의무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예산의 85%이상이 경직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을 파멸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파기된 공약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들과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약속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약속이 무너졌는데, 다시 약속을 한들 그 누가 믿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엔 ‘원칙과 신뢰’는커녕 ‘편향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공약 파기”를 넘어 “공약 사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주무부처 장관조차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해, 사퇴까지 한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고집은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과 정부안에 대한 자기합리화로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마치 공약대로 이행하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오히려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역시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일말의 책임성도 없는 공허한 빈말이자, 정치적 모면을 위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재정확보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약속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에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적극적인 부자증세,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복지국가시대에 맞는 재정지출 구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질문의원 : 이홍걸 의원(농소1,강동,송정동)
- 질문일시 : 2013. 9. 3.(제14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홍수피해 저감시설로 사용되도록 조성된 게 저류지입니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 설계, 시공 그리고 재해 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주택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시행한 화봉2지구 택지조성사업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화봉동 1471-5번지 일원에 높이 4m, 면적 2,810㎡ 규모의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저류지를 조성, 2012년8월경 우리 구에 인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저류지 고유의 기능은 살리면서, 기 조성된 저류지 시설을 활용한 편익시설물을 시공,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봉2지구 내 4m 높이의 제방으로 둘러 쌓여있는 약 600여평(제방 면적을 제외한 저류지 바닥면적)의 빗물저장소 본래의 기능은 살리고, 저류지 바닥표면에서 철골구조 등의 공법을 사용하여 지상층을 건축, 문화센터 등과 같은 주민편익시설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기 등의 유충지로 전락되어 현재 이용도 되지 않은 채 체육시설(족구장) 1점만이 덩그러니 조성되어 있는 약 600여평의 저류지 바닥은 우수기 시 홍수 사태가 발생하여 저류지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되어지는 시점 외에는 본 시설물을 상시 찾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류지와 근접한 가온공원과 함께 주민들의 평안한 휴식터 내지 쉼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저류지가 위치한 송정동은 말로만 북구의 중심 동이니, 살기 좋은 동이니 하지만 실상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공공시설물이 주민센터 외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실정이고, 가끔 이념의 중심 장으로 돼 가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어떤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개발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또한 행정의 당면한 숙제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답.변

먼저 화봉2지구 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상 유수지로 결정되어 있으며, 저류지와 용어는 다르지만 큰 기능상 차이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2지구 내 유수지는 택지조성사업 시 「자연재해대책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람근린공원 내 설치된 홍수피해 저감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에 이홍걸 의원님께서 유수지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조성하자는데 대하여 저 또한 구민의 한사람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수지 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용객의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규정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므로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이 된 본 유수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유수지 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차장만을 설치할 경우 1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주차장) 등이 선행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수지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도시텃밭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저류시설은 이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양질의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걸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농소2,3동)
- 질문일시 : 2013. 9. 3.(제142회 임시회)
- 질문요지 : 농소2·3동 주민센터의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우리 구는 1997년 7월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인구 10만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당시 구 재정도 200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16년이 지난 올해는 2,100여 억원으로, 무려 열배나 성장하였습니다. 인구 또한 개청 당시 1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9만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소2동과 농소3동이 있습니다. 농소2동은 인구가 3만 2천여 명입니다. 농소3동 또한 인구가 무려 4만 1천700명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무거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농소2동과 농소3동 주민센터는 주차장 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소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소2동 주민센터는 냉천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부지 789㎡(238.6평)를 무상 기부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017.6㎡(307.8평) 규모로 2001년 5월 24일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공시설인 동 주민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여 주신 냉천마을 주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냉천마을 주민들은 수억 원이나 하는 마을의 공동 자산인 마을회관 부지를 기부하여 주민센터가 지어지고 원활하게 사용 되길 희망했습니다만,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기부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는 인접한 신천동 203-5번지, 203-6번지, 203-7번지 총 3필지 1,974㎡(597평)를 수 년 전부터 임차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임차료로 무려 1억 6백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차료 금액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할 것인지?

둘째, 지주가 임대를 거부하면 만성적인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셋째, 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소2동과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농소2·3동 주민센터 부지를 제공하여 주신 냉천마을 주민들과 박재환님께 19만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농소2동과 농소3동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자치기능이 강화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한 행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 수의 증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주차 공간 부족이 이를 저해하지는 않을까 심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먼저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소2동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추이와 이용 주민 수에 비하면 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임대 중인 신천동 203-5번지 외 2필지, 1,974㎡(약 597평)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와 상당부분 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매입비는 약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지가 확보되면 농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프로그램 증가로 인한 부족한 청사의 증축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입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상안동 380-8번지 주변 지역은 상업지역 주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2000년3월4일 울산 광역시에서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현 부지만 완충녹지 지역에서 해제되어 동 주민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완충녹지 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점용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도 점용 가능한 시설이긴 하지만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등과 같은 토지에 한정돼 있어 주변지역의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인 현 상황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역대 구청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의 쌍용아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간시간대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협의하였으나 그마저도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면서도 관련법에 저촉되어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 주민센터 바로 인근에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질의하신 이수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곡문화센터가 올해 초 개관한 이후에 행정수요와 주민프로그램이 많이 분산되어 전보다는 주민편의가 한결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소3동 주민센터의 주차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같은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가지고 다각도로 접근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이수선 부의장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원 : 안승찬 의원(농소1,강동,송정동)
- 질문일시 : 제143회 임시회(2013. 10. 24.)
- 질문요지 : 역사의 진실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조국의 미래야 있다.



먼저 이번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윤종오 구청장과 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준비위원장과 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 북구 주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12번째 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의 지혜와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주민자치의 역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광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올바르게 기록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진실된 역사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의 한 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찬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며,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모두가 나서서 함께 싸워, 이 날의 주권을 지켜 온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특히,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 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임진왜란 당시 기박산성의 의병과 일제 식민지시대 나라를 구하고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박상진의사의 자랑스런 역사가 남아 있는 고장입니다. 또한 해방 이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애국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왔습니다. 4. 19 혁명에서부터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 1987년 민주화 대투쟁, 1991년 직선제개헌 투쟁, 2000년대 광우병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촛불집회까지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며, 역사를 발전시켜 온 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와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역사 교재로 사용되는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축소·왜곡하고, 친일인사를 항일인사로, 친일·독재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세력으로 둔갑시키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등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아이들의 역사교과서로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유명익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친일의 역사를 미화,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익 위원장은 친일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영웅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인을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도덕적 수준이 낮아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하하는 등 망언을 해왔습니다.

5분자.유.발.언

그런 사람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치욕이며, 심각한 역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100일 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원의 진실 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일삼고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를 탄압하는 등 국민과 역사의 발전,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며, 말 그대로 민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왜곡과 국민들이 하는 올바른 소리에는 귀를 닫는 불통의 정치와 깨끗한 정치를 하려는 정당과 단체는 탄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독재 권력이 해 온 정치 방식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 힘 있는 강대국에 의존하며, 총신과 반대세력은 무참히 탄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도 봉건왕족은 백성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민생에 대한 호소는 듣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청나라, 러시아, 일본에 의존하며,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난 의병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집권세력 중 친일매국세력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잘 보고 두 번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아 올바른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된 역사와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질문의원 : 이해경 의원(비례대표)
- 질문일시 : 제143회 임시회(2013. 10. 24.)
- 질문요지 : 명분 없는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협하는 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밀양은 오늘도 촌로들이 길바닥에서, 산에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공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반대해 온 밀양 송전탑 문제는 8년째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밀양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기존 345kV보다 높은 765kV의 초고압전류가 흐르는 140m(아파트 45층)높이의 송전철탑입니다. 송전선로는 울산 신고리에서 북경남사이 총 길이 90.5km로, 161기의 송전 철탑 중 밀양시 4개면 부북면(7기), 상동면(17기), 산외면(7기), 단장면(21기)에만 52개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며 세워집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선로라고 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로 주민들은 동의 없이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의해 토지가 강제수용 당하고, 정든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건강권 피해, 환경파괴, 농사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고, 촌로들은 정든 고향땅을 잃는 안타까움과 한전, 시공사, 용역업체의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동과 국가 공권력의 위협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4개면 22개 마을주민 70%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어, 9. 11테러를 겪은 미국인들의 수치인 15%보다 4배 높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전과 정부의 태도에 밀양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전류에 따른 건강문제, 재산피해, 자연경관 파괴 우려에 따른 송전탑 건설반대에 국민들의 66%가 공감하고 있고, 63.4%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지중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한전은 전력난을 핑계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제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 8월 가동계획을 세웠던 신고리 3호기 발전전력이 없어도, 내년도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생산량의 1.7%(140만kW)에 불과하고, 이것은 영남권의 수요 관리와 다른 발전소 가동을 높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고리 1,2,3,4호기 와 신고리 1,2호기 총 6기에서 보내는 345kV를 송전선로를 통해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추가 송출하더라도 송전용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철의 전력 수급과 밀양 송전선로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은 올 연말이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고리 3호기 가동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전력난이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6일, JS전선이 납품한 신고리 3,4호기 전력/제어/계장 케이블 화염 시험에 실패하여 부품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소 2년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미 알려진대로 지난 4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이 위조부품으로, 재시험이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가동 중인 동일 모델이 없어 안전등급 케이블의 기기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세계 어디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체선정과, 기기검증, 제작, 활성화에너지추출, 정상상태 방사능조사, 열적노화시험, 사고 방사성조사, 냉각재 상실사고시험, 성능시험과 재시공, 테스트, 운영허가, 연료장착, 시험운전을 고려하면 빨라도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측은 밀양송전선로 공사를 차질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는 2014년 8월 최대수용 전력량은 8,033만kW에 설비용량은 8,700kW, 설비예비력 667kW로 설비예비율은 8.3%입니다. 신고리 3호기(140만kW)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예비전력은 527만kW로 예비율은 6.6%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과 여름에 의무적으로 실시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로 생긴 평균 291만kW를 합치면 예비전력은 818만kW이고, 예비율은 10.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원전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이 안되는 고리 2호기, 영광 2호기, 월성 2호기의 발전량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558만kW, 예비율 6.9%입니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와 계획예방정비 원전 3기를 제외하더라도 내년 여름과 겨울의 전력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400만kW를 안정적인 예비전력이라며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했고,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화염시험 실패 후, 갑자기 전력수급 마지노선을 500만kW라고 하며 전력난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의 무리한 가동으로 인해 생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신고리와 월성 사이 반경 30km 이내에 400만명이 살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까지 지어지면 총 12기의 원전이 있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밀양 송전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처리에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며, 환경 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바다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수입 중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을 위한 케이블 교체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력난을 핑계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절차와 공정을 생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명분 없는 밀양철탑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효문,양정,염포동)
- 질문일시 : 제144회 제2차 정례회(2013. 11. 20.)
- 질문요지 : 민주주의 파괴, 진보정당 해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자랑스런 통합진보당의 북구의회 의원 강진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오늘로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115명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도 삭발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민 접촉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지방의원, 그것도 여성의원인 삭발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노동자·서민·중소·영세상인들의 희망인 진보정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쓰러져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을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저는 이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어떤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박근혜정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제3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날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거쳐 1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제3당인 공당입니다. 6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2명의 구청장과 115명의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통합진보당의 공직자들은 지금도 지역주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어떤 당의 의원들보다 실력 있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단식도 마다않고,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는 투쟁현장이라면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의원활동을 했던 지난 3년 6개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원이 아니었다면 감히 만나지 못했을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청사에서 청소를 하시는 청소노동자들, 가로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차별 받는 장애인과 장애 자녀를 키우며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장애인 부모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한부모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망과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며, 저희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정책과 가치를 알리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통합진보당은 북구 주민들을 만나게 해 준 소중한 핏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그런 정당을 해산할 권리,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정당은 정치적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정당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부와 권력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권리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박근혜정부야말로 위헌정부입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종북으로 몰고 해산시킨다면...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 유신이 종말을 맞고,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박근혜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를 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데, 새누리당은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해산하겠다고 맞장구치고 나서는 것을 보니 지금이 과연 2013년인지... 1970년대 유신시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에 동조하고 박근혜 정권을 찬양하면 민주주의고, 비판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이든 시민사회든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이 친박 아니면 종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노동자·서민·중소·영세상인의 희망인 진보정당을 지켜주십시오. 저 또한, 통합진보당의 자랑스러운 의원으로서 최선두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정당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질문의원 : 이혜경 의원(비례대표)
- 질문일시 : 제144회 정례회(2013. 11. 20.)
- 질문요지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진보당 14년



진보당 14년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길이었습니니다. 결코 민주주의에 반하거나 헌법적 민주 질서를 위배하지 않았습니니다. 1996년12월26일 단 몇 분 만에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법」 등 노동악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등 서민들이 모여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14년 동안 진보당은 한국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저 또한 지난 3년 5개월 지방정치 활동에서 한 번도 주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민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발로 뛰어다니며 수도 없이 주민들을 만났습니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되고 차별받고 서러움 당하는 곳을 먼저 찾아 다녔습니니다. 한부모 동별 간담회를 만들어 한부모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한부모 가족간에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북구 한부모가족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편의시설 점검을 하여 개선하였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조례도 장애인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관심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울산 지부에서는 장애정책 우수의원 상을 3년 연속 주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등과 2011년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에서 우리나라 특히 울산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반대와 함께 핵발전을 대신할 친환경에너지와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핵발전 반대에 참여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고민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반대하여 유통산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 법령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울산전역에 실시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이 좋다. 우리 마을이 행복하다.' 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서관사업 활성화를 위해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 함께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울분과 차별에 분노하며 같이 해 왔습니니다.

저의 그동안 활동은 우리 모든 진보당 의원들의 활동이었고, 진보당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1% 부자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절대 다수노동자 서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이기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며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가치 아래 자주,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어민, 도시빈민, 중소기업·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존재한다.’ 라는 강령대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활동했습니다.

2000년 진보당이 내세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중요 정책이 되었고,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제기하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대통령의 공약이 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병원비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제기와 경남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와 보험 확대 적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인정한 부유세 신설과 해외투기자본 감시 등 경제 민주화를 선도해 오기도 했습니다.

재벌 횡포에 맞선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제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 운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이자제한법 발의, 신용회복상담을 통해 서민경제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진보당은 진성당원제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당 운영을 결정하고 당직, 공직자후보를 선출하여 금권 부정선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치 세력화를 앞장서서 실행하여 여성할당제를 30% 도입하고, 여성 비례대표 50%, 비례 1순위는 여성으로 공천하여 다른 당이 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시행하고, 「주민소환법」을 제정하여 비리, 부정 공직자를 소환하는 공직 비리 척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사, 고령농에도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발작물직불금제도 시행, 울산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연말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였던 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는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헌신적인 활동과 민중의 삶을 지키려는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창당 10년 만에 제3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보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국민들이 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경제 민주화와 정당 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보당의 활동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인정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몇 명 소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라’ 는 법정스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질문의원 : 안승찬 의원(농소1,강동,송정동)
- 질문일시 : 제144회 제2차 정례회(2013. 11. 20.)
- 질문요지 :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삭발한 저를 보고 “머리를 왜 삭발했냐?”고 묻는 사람들보다 “고생 많습니다.”, “힘내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전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주민운동’ 한다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가졌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작은도서관 운동과 책 읽는 북구 만들기, 전국으로 처음 실시한 친환경 경무상급식,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북구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운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아동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북구,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 예산 심의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반기 의장 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선거 때 한 약속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울산 북구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늘 제144회 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늘 제144회 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 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전자결재로 15년 동안 활동해 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키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내용은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 명의 지방선출직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 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통일 운동을 해 온 기억들이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시청 앞 농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과 함께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뿐 아니라, 우리 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 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 의원 11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 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만 해도 올해 최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비롯하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국가에서 선정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올해 12번째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것,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것, 전국 최초의 친환경 급식 실현과 책 읽는 북구 만들기 사업,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된 주민과의 소통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장애인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상을 강진희의원, 이해경의원 등 대부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 온 지난 15여 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 내부의 찍어 내기 사정과 역사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후퇴되며 탄압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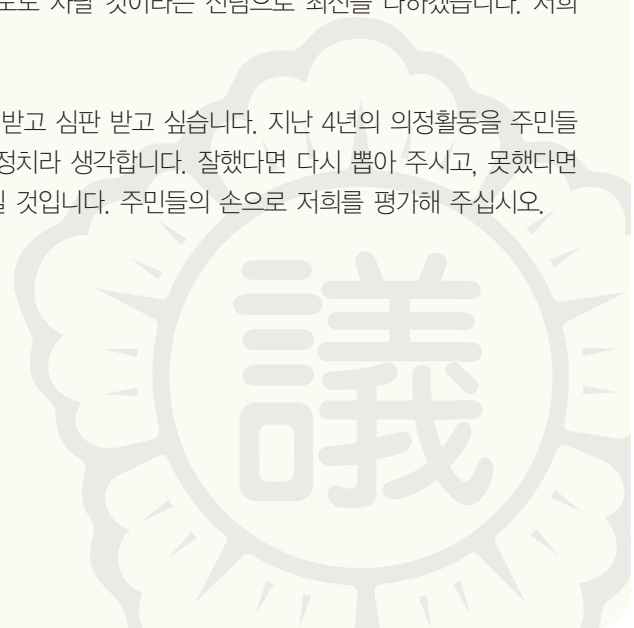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110여 명의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 예산 심의 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지방자치제도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평가 받고 심판 받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평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 생각합니다. 잘했다면 다시 뽑아 주시고, 못했다면 낙선으로 심판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십시오.



5분자.유.발.언

Ulsan Buk-gu Council Newslett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효문,양정,염포동)
- 질문일시 : 제144회 제2차 정례회(2013. 12. 16.)
- 질문요지 :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원년입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예산은 중앙에 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만큼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이 활성화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는 '건전성', '효율성'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정 규율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을 남성과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구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2013년 성인지 예산서와 2014년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점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로 총 40개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97억 3,8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869억 5,867만 8천원의 5.2%를 차지합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지자체 성인지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03% 인데, 우리구는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2014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2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로 총 32개이며, 올해에 비해 8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387억 4,7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인 2,062억 4,638만 6천원의 18.8%를 차지합니다. 2013년 5.2%에서 18.8%로 무려 13.6%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4년 새롭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사회복지과의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308억 4,100만원을 제외하면 79억 6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안의 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성인지 예산 중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9.6%나 됩니다.

사업의 개수와 예산의 크기만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이 잘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이 주민참여과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문화체육과는 2개에서 1개로, 복지지원과도 4개에서 2개로, 사회복지과는 12개에서 8개로, 도시녹지과는 1개에서 0개로 줄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수 사업인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제외하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기획홍보실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먼저 성인지 사업명을 적고, 사업개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자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성인지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목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데,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가 제시되지 않거나 부실한 통계자료가 반영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합니다. 큰 틀에서 성평등 문제와 관련이 높은 사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 성별분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실례로 남성 이용률이 적은 도서관에선, 남성 이용자에게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떤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더 올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도서관 이용률이 남녀의 학습 격차를 낚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하나임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음 연도에 새 책을 비치할 때 남성 수요에 맞는 책을 구입하여 성별 차이를 조율해 나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공체육관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을 설문조사함으로써, 체육관의 불편한 탈의실 때문에 사설 피트니스센터를 다니는 여성이 많음을 파악하여, 시설 개보수 기간에 여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탈의실 개선에 주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남녀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 빈도를 조사해 상당수의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들이 놀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고, 특히 여자 아이들이 놀이터가 외지고 어두컴컴할수록, 입구와 계단 모양이 불편할수록 해당 놀이터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따라 놀이터 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교육, 문화, 체육 관련 사업들에 대해 성별 수혜분석을 하고, 성별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한다면, 쉽게 성인지 예산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한날 늘어난 하나의 업무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도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 구분)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별분리 통계는 성인지 예산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따른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과관리 예산서보다 한층 더 강화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소식(2013. 7. 24)



당사해양낙시공원 개장식(2013. 7. 26)



중산행복샘 개장식(2013. 9. 11)



2013 울산북구의 책 북콘서트(2013. 9. 27)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2013. 10. 16)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2013. 12. 2)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2013. 12. 6)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개청식(2013. 12. 11)



당사 해녀의 집 개소식(2013. 12. 12)



북구 치매지원센터 개소식(2013. 12. 13)



북구의회 2013년도 종무식(2013. 12. 26)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공사 기공식(2013. 12. 27)



주민과 항상



함께하는 북구의회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10:00 ~ 17:00 (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82 팩스 : 241-8989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의 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윤 치 용	이 수 선	강 진 희	안 승 찬	이 홍 길	정 윤 석	이 혜 경
의장실 : 241-8900 010-5231-7321	부의장실 : 241-8910 010-2833-1929	사무실 : 241-8950 010-8610-4748	사무실 : 214-8920 010-6587-1287	사무실 : 241-8930 010-2950-3763	사무실 : 241-8940 010-3835-6035	사무실 : 241-8960 010-9448-1364

※ 의회 방문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241-8982
F A X 241-898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층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인이신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